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및 발의일자: 배상신의원 외 7인(2024. 07. 18)

나. 회부일자 : 2024년 07월 18일

다. 상정일자

O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4. 07. 30)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배상신 의원)

가. 제안이유

○ 포항시 관내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관련법령

- O「도로법」
- O「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명권)

○ 본 조례안은 포항시 관내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O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4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5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O 종합검토 결과,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승차구매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설의 특성상 보행로를 횡단하여 차량이 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보행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되고 있으며, 또한 대기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통안전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바, 기존 승차구매점에 대하여도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 사항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6. 토론의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